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26 |
|----------|-----|

성북구푸드뱅크·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성북구 푸드뱅크·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1.
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226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'성북구 푸드뱅크·마켓센터'의 재위탁(재계약)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(재위탁 및 재계약)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재위탁(재계약) 시설 현황

| 구 분 | 1호점 | 2호점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 설 명 | |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|
| 운영주체 | |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|
| 소 재 지 |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, 3층 | 성북구 오페산로 4, 1층 |
| 종사자수 | 3명 | 2명 |
| 관할지역 | 성북동 ~ 길음동 | 종암동 ~ 석관동 |
| 위탁기간 | 2021. 4. 7. ~ 2024. 4. 6. | 2021. 4. 7. ~ 2024. 4. 6. |

- 2021. 4. 1.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수탁 협약
- 2023.11. 2.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재계약 의사 표명

나. 위탁기간 : 2024. 4. 7. ~ 2027. 4. 6. (3년)

다. 위탁사업의 범위

- 성북구 푸드뱅크·마켓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수탁자 선정방법

-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의·의결을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함.
- 단,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 법인 적격 심사하여 재위탁 선정(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)

4. 참고사항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0조

5. 검토의견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성북구푸드뱅크·마켓센터’(이하 “센터”라 함)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‘센터’의 운영을 재계약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 함)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2024년 4월 6일자로 ‘센터’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회 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선정심의위원회 부적격 시, 공개모집 공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및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<성북구푸드뱅크·마켓센터 민간위탁 현황 및 실적>

| 구분 | 소재지 | 연간사업비 | 위탁체 | 위탁기간 | 운영인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북구 푸드뱅크 · 마켓센터 (1호점) | 아리랑로4길 22, 3층 (132㎡) | 총계 : 231,577천원 -인건비 : 188,594천원 -운영비 : 42,983천원 | | 2021.4.7.~ 2024.4.6. | · 센터장 : 1명 · 직원 : 2명 |
| 성북구 푸드뱅크 · 마켓센터 (2호점) | 오패산로 4, 1층 (82.02㎡) | 총계 : 162,926천원 -인건비 : 98,370천원 -운영비 : 64,556천원 |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| | · 직원 : 2명 |

○ 기탁품 접수 및 배분 현황

(2023. 10월 말 기준)

| 구분 | 2022년 | 2023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부접수 | 6,680건 1,120,572천 원 | 5,886건 897,574천 원 |
| 배분 | 63,526건 1,262,571천 원 | 44,383건 986,548천 원 |

※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에서 기부물품을 인수하여 기부접수액보다 배분액이 큼

○ 이용자 현황

(2023. 10월 말 기준)

| 구분 | 2022년 | 2023년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등록회원 | 787명 | 978명 | 월1회 이용 |
| 日 평균 이용인원 | 36명 | 44명 | |

다. 법적근거 및 재계약의 적정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제2항 및 제3항¹⁾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추진은 절차상 적정하다고 사료 됨.
- 또한 ‘센터’의 관리 운영사무는 후원자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무로써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재계약 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.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계약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6.12.29.)

-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7조 및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 됨.

라.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